



선진 환경오염보험제도의 소개 및 시사점

1. 머리말

최근 웰빙열풍으로 인해 일반 식생활에서도 무농약 유기농 채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원자력 폐기물의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운영에 있어 환경관련 사고 발생시 점차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환경오염보험을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환경오염보험 가입에 대한 의원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여기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환경오염보험을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미국

미국에서 정부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직면한 두 가지 문제는, 과거에 버려진 유해폐기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현재 및 향후의 유해폐기물 처리를 규제하는 것이



이 범
삼성외재 프로젝트 개발팀장



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환경정책은 오염현장정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강력한 규제틀을 통한 환경오염 억제를 그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배경 하에 1980년대 초에 제정된 미국의 환경관련 법률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과거의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업체들로 하여금 향후 환경오염에 대비한 오염정화비용의 재정적 부담능력의 확보를 사전에 증명해 보이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환경규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손실의 예방과 감소, 환경재난위험에 대한 재원확보를 통한 피해복구 및 피해자구제를 환경정책의 주목적으로 하여 미국의 각종 재

〈표 1〉 「환경기금계획(Superfund Program)」의 개요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과거의 유해폐기물 현장의 정화를 수행하고 이의 소요비용 마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0년 간 유해폐기물 현장의 정화에 소요되는 추정 전체 비용은 약 1,000억~1조 달러 정도임 • 연방환경보호청은 33,000여 곳 이상의 유해폐기물 현장 목록에서 약 1,300여 곳을 지정하여 전국 우선순위 목록(National Priority List) 또는 환경기금 목록에 포함시킴 • 이 목록은 가장 관심이 필요한 지역, 즉 가장 심각한 정화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목록임 • 향후 5,000여 개의 오염현장이 본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한 장소당 평균 정화비용 : 3천만 달러 • 정화완료까지의 평균소요기간 : 약 10년
재원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되는 비용의 마련은 세금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원인자에는 유해폐기물 현장의 현재 및 과거시설물 소유자, 운영/관리자, 생산자, 운송자 등을 망라하며 사기업은 물론 정부기관들도 포함됨 • 연방환경보호청은 원인자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현장정화를 수행(전체의 약 70%)토록 설득하고 있으나, 원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엔 연방환경보호청이 자체 기금을 사용하여 현장정화를 먼저 수행한 후 소요비용을 소송을 통해 원인자로부터 징수(전체의 약 30%)하고 있음
적용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책임 원칙 : 과거의 유해폐기물 처리자가 당시의 제반규정을 준수했다 해도 현재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됨 • 무과실책임 : 원인자의 과실증명 없이 단지 유해물 폐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원칙 • 연대책임 원칙 : 환경오염을 초래한 원인이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인을 찾아 낼 수 없거나 혹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특정 환경오염 사고의 일부분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누구라도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도록 규정 <p>⇒ 본 원칙은 환경보호국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자뿐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도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p>

해·재난관리기관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독립·분리하여 별도의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거 다양한 환경규정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기관인 「연방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연방환경보호청에서는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현장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의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공표하고 그들이 오염정화를 실시토록 조치하거나 오염정화 후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기금계획(Superfund Program)」을 수립하여 오염지역 정화사업 및 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마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환경관련 법규는 사고예방 등의 사전 재난관리 분야와 피해자 구제 및 피해복구 등의 사후 재난관리 분야를 병행하여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을 취급·배출하는 업체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손해의 배상과 오염현장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재정능력의 증명은 환경오염보험의 가입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미국에서 환경오염보험은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기금계획(Superfund Program)」과 같은 엄격하고 강력한 법에 의한 각종 규제 및 오염현장의 정화비용에 대한 자력배상능력의 확보를 사전 증명해야 되는 규정 등으로 인해 가입 자체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표 2〉 환경오염보험 상품 및 일반 특징

보험상품	담보내용	일반적인 특징
특정지역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유해폐기물 처리·저장과 폐기시설 운영자 및 화학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는 기업을 위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특성별 맞춤형 약관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및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오염사고 담보
도급업자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오염현장의 복구·수습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행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청구기준 증권 • 보통의 경우 소급일은 규정하지 않으나 알려진 기존 사고는 면책함 • 연장보고기간의 존재 : 추가보험료, 최대 1년 • 소송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
환경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유해폐기물 현장의 정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는 환경엔지니어 및 컨설턴트를 위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정화비용은 보통의 경우 신채상해 및 재산손해와 함께 보상
환경구제보험	은행/차용자, 담보재산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의 비용보상을 위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오염사고에서 야기되는 모든 청구는 단일 피해로 처리 • 보험의 인수는 상세한 질문서와 현장검사 및 환경감사 필수 • 징벌적 벌과금, 계약상의 가중책임 등 면책



:: 특집 | 재난보험제도의 도입과 운용 방향

미국의 환경오염보험은 정형화된 표준약관(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모든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 계약자의 특정 환경오염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자 위주의 맞춤형약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경오염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맞춤형 환경오염보험의 기본적인 틀로서 사용되는 보험상품 및 그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3. 독일

독일에서는 환경오염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등 고통받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운영자는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체계의 구성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에 「환경오염배상법(Environmental Liability Act)」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본 법에서는 환경오염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세분화하여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및 기타 시설물운영에 책임 있는 자에게 당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시설물은 공장, 플랜트, 오염물질의 저장·취급시설과 같은 연속적인 시설물과 기계, 기구, 자동차, 기타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 및

<표 3> 환경오염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물

시설물군	세부 시설물
열 제조, 광산, 에너지	각종 발전소, 용광로, 핵연료 저장시설, 연탄 제조시설 등
비금속미네랄, 유리, 세라믹, 건축자재	시멘트 제조시설, 석면 제조시설, 미네랄 물질용해시설 등
강철, 철 및 기타 금속	광석용해, 선철 또는 비철금속의 제조, 고열처리 용접파이프 제조시설 등
화학제품, 의약품, 광물성 기름의 정제/처리	화학반응을 이용한 각종 가스제조, 농약제조, 유약제조시설 등
유기물질을 이용한 표면처리, 필름제조, 합성물질 제조	필름용지제조, 유리섬유제조, 절연전선제조 등
목재, 펄프	목재펄프, 목재소재 널빤지 제조 등
영양소, 고급 음식물, 사료, 농산물	일정 규모 이상의 양계·양돈장, 사료제조, 식물성 기름제조 시설 등
쓰레기처리·재생	고체/액체금속의 연소를 이용한 폐기 시설, 퇴비작업, 가정쓰레기의 소각
각종 물질의 보관, 선적, 하역작업	비료, 가스 등의 유해물질 보관시설
기 타	폭발성물질의 제조, 처리, 제거작업, 피치(Pitch)의 증류, 셀룰로이드 제조

4. 맺음말

보조 구조물로서,「환경오염배상법(ELA)」에서는 이들 시설물을 10개의 군(Category)으로 일차 분류하고, 각 군별 세부시설물의 종류를 총 96개 시설물로 지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시설물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당해 시설물의 운전자 및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발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환경오염 사실의 존재여부와 피해정도를 명확히 확인·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환경오염보험은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배상법(ELA)」의 규정에 부합하는 보험약관의 구성 및 개발을 통하여 법률상의 다양한 의무가입 대상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환경오염보험에서는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이전에 피보험자가 집행한 비용, 즉 시설물의 오염측정 비용, 환경오염위험의 예방 경감 비용,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수행 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연장보고기간을 두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으나 발견 또는 청구되지 않은 오염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담보하고 있다. 특히, 독일 내에서의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해외에서의 오염사고도 담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소송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환경사고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환경오염보험 가입의 임의,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도입이 안되고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언더라이팅이나 손해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전문성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석면클레임으로 대표되는 사고로 인해 여러 보험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사고의 노출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환경오염보험제도의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㉞

